

학점포기제, 문제점과 극복 방안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념에 관하여 “교육은 흥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어서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육의 자주성·전

문성·자율성을 다시 선언한다.

헌법과 법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대학자율의 영역에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한 이슈로 학점포기제가 있다. 힘들여 취득한 학점을 버린다? 얼핏 보면 상식에 반하는 일이 우리 대학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다.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학자율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상황

을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의 단면만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는 원인이 있다. 국가가 대학 학사관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쓰는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학의 현실이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의 철학과 대학의 공신력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학점포기제의 문제점 인식을 토대로 이 제도를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2. 학점포기제의 개념과 문제점

학점포기제란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것이다. 학점포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등록학기 7회 이상으로서 졸업을 앞둔 학생이 졸업 전 1회에 한하여 6학점 정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교적 엄격한 대학에서부터, 등록학기와 총 취득학점과 무관하게 매학기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교적 느슨한 대학까지 다양하다. 낮은 학점을 받은 과목의 수강 사실을 말소하게 되면 평점평균이 올라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이 학점포기제의 요체이다. 사람들은 이 변칙적 상황에 대하여 대학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대학이 학생들의 이른바 '학

점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점포기제는 수업분위기 및 평가체계를 어지럽히고, 교수의 학점부여 권한을 무의미 내지 축소시킨다. 또한 학점포기제는 상대평가 제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학점포기제는 재수강제와 더불어 대학의 신뢰도와 권위 추락의 주요 원인이다. 어디 그뿐인가? 학점포기를 신청했다가 사정이 변경되어 학점포기 신청을 다시 취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학점포기제를 옹호하는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수업을 학점에 얹매이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든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재수강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왔던 제도인데 어찌 나쁜 점만 있겠는가? 그렇지만 학점포기제의 요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학점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 무게를 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보다 높은 성적을 원하는 것을 어떻게 잘못이라 하겠는가. 또한, 자기 대학 소속 학생이 다른 대학 학생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대학의 딱한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점포기제는 그 효과의 시각에서 찬반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교육 및 대학의 본질의 시각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학점포기제는 엄연히 수강한 과목을 문서에서 말소하는 방법으로 학적기록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대학에서 진실에 반하는 방식으로

학적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정의(情誼)에 이끌려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지키지 못하면 대학은 그 순간부터 권위를 잃는 것이다. 학점포기제를 통한 '학점 부풀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 좋아 평가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실에 반하는 것을 대학이 제도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여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기도 하다.

학점포기제가 교육 및 대학의 본질에 폐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하니 이제라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매우 효과적인 방안은 법령으로 학점포기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마치 종이를 자르기 위해 도끼날을 힘겹게 가는 것과 비슷하다. 도끼로는 장작을 패고, 종이는 그에 맞는 칼을 써서 자를 일이다. 한편, 모든 대학들이 합의하여 일시에 전격 폐지를 단행하는 것도 너무 급진적이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학점포기제의 극복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3. 학점포기제의 극복방안

가. 학점포기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과

학업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

적절한 방책은 원인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학점포기제의 원인은 성적지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시험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도 한몫 거들었다. 이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법으로서 천편일률적인 시험에서 벗어나 보다 참신한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보아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으로 1등부터 꼴찌를 구별하는 것이 농사만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시험이 매우 부적절한 평가방법인 경우도 있다. 오래 전에 5급사무관 승진시험 출제를 하면서 관리담당자에게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한 사람에 비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억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 일은 안하고 시험공부에 매진하여 승진한 공무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60세에 가까운 인문학 교수들을 평가한답시고 삼각함수 문제를 들이대는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이 합리성이 없는 평가방식일 수 있다.

시험보다 더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있기는 하나 시험이 가장 명확하고 이의제기의 가능성 이 적으니, 시험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면 평가자는 계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 분야의 여러 연구 성과를 고등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성적표에 관한 시각의 전환

전통적 관념은 성적표로써 점수가 얼마나 등수가 어떤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성적표를 요모조모 뜯어보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다. 취업시장에서 단순히 점수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강과목의 실질적 내용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성적표에 관한 시각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수학점 외에는 여러 학과를 방랑하며 쉽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어렵게 채워진 성적표는 영혼없는 응변과 다를 것이 없다. 기업은 성적 표 맨 끝의 평점평균이 아니라, 학생이 해당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령 면접에서 학생에게 자기 성적표를 보면서 그 컨셉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인재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기업에서 평점평균이 4.0인 학생을 제치고 2.5인 학생을 자신있게 선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요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 채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도 NCS 기반 채용을 확산하여 학력, 학점 등 소위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평가하는 채용문화 정착에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NCS가 취업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공기업·공공기관 130여 곳이 NCS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올

해는 이보다 100여 곳이 늘어난 230여 곳이 NCS를 적용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316개 모든 공기업이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기업의 채용 방식을 스펙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사회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사교육의 비대화와 공교육의 파괴, 수도권 내지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국토 균형발전의 장애, 공부하는 기계로 내몰린 중고등학생들의 비애… 이런 것들도 모두 따지고 보면 사회가 이른바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기업의 채용 기준 변화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에 해당한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완충적 개선

대학 스스로 학점포기제를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육철학 및 대학의 본질에 어긋나니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 떳떳한 모습은 아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방향에서 우선은 완충적 개선을 하고, 학생에 대한 실질적 능력 중심의 평가에 관한

사회적 제도가 정비되는 등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교육 및 대학의 본질에 부합하는 성적평가 제도를 확정하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도 낮은 학점에 대한 두려움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으니 학점포기제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편의적 입장과 학적관리의 진실성 확보라는 가치를 절충하는 완충적 시각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포기하고 싶은 과목의 학점 옆에 포기(Withdraw)를 의미하는 'W'를 병기하고, 이 과목은 총 평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때 포기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은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실질적 능력 중심의 평가에 관한 사회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긴요한 이유이다.

라. 한 대학의 사례

2013년 12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에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점포기제의 폐지도 권고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그 이후 대학들은 학점포기제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점포기제를 폐지한 이유들이 대학마다 한결같지는 않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와 상관없이 학사제도의 엄정성이라는 철학 위에서 그 전부터 학사운영 전반을 개혁하면서 그 안에 학점포기제 폐지도 포함시

켰다. 한편, 적지 않은 대학은 2013년 12월 이후 교육부의 대학평가 항목 중 학사관리 분야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학점포기제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한다. 학점포기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2012년부터 교수와 실무가로 TF를 구성하여 「고려대학교 학칙」(2014. 1. 1. 제정, 2014. 3. 1. 시행)의 전부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학사운영에 관하여 여기저기 산재하는 여러 학교규칙을 통폐합하고, 교육철학의 시각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학칙」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총 138개 조문의 「학사운영 규정」(2014. 1. 1. 제정, 2014. 3. 1. 시행)이 그것이다.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의 기록도 충실히 기재한다든가 재수강 사실을 기재하는 등 정직하고 엄정한 학적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학점포기제에 대하여 「학사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①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 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 ④ 이수 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교과목 폐지의 경우 외에는 학점포기를 금지하되, 학점포기를 하더라도 포기 사실을 기재하여 기록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포기 사실을 'W'로 기재는 하되,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학점포기 신청을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책임있는 선택을 유도했다. 한편, 학점포기 금지는 「학사운영 규정」의 시행일인 2014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하여(부칙 제4조 제1항)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하다는 연구결과가 대세임에도 선뜻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수강을 제한하느냐 마느냐로 비생산적이고 지리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졸업유예생에게 대학이 나름의 이유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청구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나오고...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그런 정도의 사안을 법률 개정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세계 대학의 공통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대학 특유의 이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결의 열쇠도 우리들의 손에 있다.

학점포기제 등 문제 해결의 출발은 교육철학과 대학의 본질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철학적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같은 미봉책은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맷음말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이슈들을 생산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상대평가, 재수강, 졸업유예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에서 상대평가는 매우 낮선 평가방식이다. 교육학의 시각에서는 절대평가는 바람직

필자소개

명순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파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전국교무처장협의회 회장, Erasmus Mundus 초빙교수 Uni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민법학원론」, 「법경제학」, 「러시아법입문」, 「실록 대한민국민법 1, 2, 3」, 「국민건강보험법」, 「미술품의 거래와 세금」 등이 있으며,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법, 비교법, 법사학, 의료법, 대학교육 등이다.